



하늘의 문 성당 봉헌자 준수사항

제1조 (목적)

본 준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하늘의 문 성당」에서 운영·관리하는 봉안함(유골)을 경건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봉안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 ① 시설의 명칭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하늘의 문 성당(이하 "하늘의 문 성당")」이라 한다.
- ② 시설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152-1 일원으로 정한다.

제3조 (관련 법률의 적용)

본 준수사항은 「천주교 인천교구 하늘의 문 봉안시설 운영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및 「민법」을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봉헌금"이란 세상을 떠난 선종자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육신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교리를 선교하는 "성당"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내는 금원을 말한다.
- ② "신심기금봉헌금"이란 세상을 떠난 선종자들의 선종 예식과 기일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설 및 추석 명절에 합동미사 등을 봉헌하는 금원을 말한다.
- ③ "봉헌자"란 하늘의 문 성당에 봉헌한 자를 말한다.
- ④ "봉안(예정)자"란 봉안단에 봉안되거나 봉안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 ⑤ 기타 용어는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을 따르고,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준한다.

제5조 (자격 요건)

- ① 하늘의 문 성당에 봉헌한 사람이 봉안할 수 있고 봉안 예정자(고인)를 지정해야 한다.
- ② 봉헌자 또는 봉안(예정)자는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해당 서류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봉헌자 또는 봉안(예정)자의 소속 본당 교적증명서
 2. 봉헌자 또는 봉안(예정)자의 세례 증명서
 3. 봉안(예정)자의 대세 증명서
- ③ 봉헌자는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봉헌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되도록 발급)
 3. 제적등본
 4. 기타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
- ④ 다만, 비신자는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등재 1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며 봉헌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제6조 (기본조건 및 성립, 증명)

- ① "기본 조건"이란 봉헌자는 약정 봉헌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모두 봉헌해야 한다. 봉헌된 모든 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② "성립"이란 봉안신청은 약정한 봉헌금을 모두 봉헌한 날로 성립되며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자는 봉헌자 명의로 동일하여야 한다.
- ③ "증명"은 하늘의 문 성당이 발행하는 봉헌증서로 이를 증명한다. 다만, 봉헌자가 봉안하고자 할 경우, 하늘의 문 성당은 봉헌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봉헌증서 대신 봉헌자의 간편 신분 확인 절차로 봉헌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허용 범위 및 소멸)

- ① 봉헌자는 봉안 관련한 허용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봉헌자는 약정한 인원(위)의 확장된 유골만을 봉안할 수 있다.

2. 봉안단 선택 후에는 봉안 전이라도 위치 변경이 불가하며, 개인단 선택 후 부부단으로 변경시 새로운 봉헌 약정을 하여야 한다.
3.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유골을 하나의 봉안단 및 봉안함에 봉안할 수 없다.
4. 봉헌자는 교구가 승인한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봉안 작업을 할 수 없다.
- ②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모든 권한이 소멸한다.
 1. 봉안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2. 봉안 중 유골이 반출되는 경우
 3. 하늘의 문 성당의 승인 없이 봉헌증서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봉안시설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30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연장을 위한 신심기금봉헌금을 봉헌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효력상실 등)

- ① 봉헌자가 신청일 다음 날까지 최초 약정 봉헌금을 봉헌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봉헌금 전액을 약정일까지 봉헌하지 아니할 경우는 봉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봉안이 종료 또는 취소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다음의 조치에 따른다.
 1. 봉안이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하늘의 문 성당은 봉안된 유골을 봉헌자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2. 봉안 종료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출을 거부하거나 봉헌자 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하늘의 문 성당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가. 봉안단에 봉안된 유골의 반출 후 무연고처리
 - 나. 봉헌자 또는 연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방문하지 않는 경우 무연고처리

제9조 (기한)

- ① 산정 기준일은 봉안단 봉안 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봉안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개인단은 유골의 봉안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30년까지 연장가능하다.(최장 60년)
 2. 부부단은 최종 봉안되는 유골의 봉안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30년까지 연장가능하다.(최장 60년)
- ③ 봉안 기한의 연장은 신심기금봉헌금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30년 만료 후 30년 단위 1회 또는 15년 단위로 2회로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2. 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고 봉헌해야 한다.

제10조 (봉안단 양도 및 매매금지)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단의 봉헌이 확정된 자는 하늘의 문 성당의 승인 없이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임의로 권한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 (승계)

- ① 봉헌증서의 승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 ② 위 항에 따라 승계 및 봉헌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③ 하늘의 문 성당은 제1항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승계에 대한 자료 입증을 못했을 경우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하늘의 문 성당 주임신부의 승인 없는 승계는 무효로 처리된다.

제12조 (재 봉헌)

- ① 제9조에 따른 봉안단 기한이 정상 종료되었으나 해당 봉안단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를 재봉헌할 수 있다.
 1. 제5조(자격 요건) 및 제6조(기본조건 및 성립)에 따라 새로운 봉헌을 약정해야 한다.

2. 약정된 봉헌금과 신심기금봉헌금을 일시금으로 봉헌해야 한다. (제13조 참고)

제13조 (봉헌금 및 신심기금봉헌금 봉헌)

- ① “봉헌금”은 지정한 봉헌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봉헌단의 봉헌을 포기할 경우 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1. 봉헌단 위치 지정을 위해 약정금액의 10%를 신청일 다음 날까지 봉헌해야 한다.
 2. 봉헌단 위치 확정을 위해 약정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금으로 봉헌해야 한다.
 3. 30년경과 이후 30년 연장 봉헌할 수 있으나 신심기금봉헌금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4. 60년경과 이후 기한연장을 원할 경우 새로운 봉헌 약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신심기금봉헌금”은 봉헌을 포기할 경우 선납한 신심기금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1. 첫 봉헌 시 30년 단위 일시금으로 봉헌한다.
 2. 30년 이후 30년 단위 1회 또는 15년 단위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봉헌한다. 단, 부부단의 경우는 최종 봉헌 시 첫 봉헌자의 봉헌 기간(첫 봉헌자의 봉헌일부터 최종 봉헌자의 봉헌일까지)에 대하여 일시금(연납)으로 봉헌한다.
 3. 봉헌단의 봉헌 기한이 만료되는 해당 월의 3개월 이전까지 일시금으로 사전 봉헌한다.
 4. 봉헌단 봉헌 후 봉헌하지 않고 30년 경과 시 하늘의 문 성당에서 정한 관리 형태의 봉헌금을 년 단위로 봉헌한다.
- ③ 기타사항
 1. “신심기금봉헌금”은 봉헌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미 봉헌한 봉헌금에 대하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3. “신심기금봉헌금”은 부부단의 경우 봉헌 시마다 각각 개별 봉헌해야 한다.

제14조 (신고 의무)

- ① “봉헌자의 의무”란 봉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하늘의 문 성당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 봉헌자의 주소 변경의 경우
 2. 봉헌자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변경의 경우
 3. 기타 봉헌자의 주요 정보변동 및 하늘의 문 성당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경우
- ② “기타 연고자의 의무”란 봉헌자의 유고(有故)가 발생했을 경우 연고자는 즉시 해당 사실을 하늘의 문 성당에 알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1. 봉헌자의 유고(有故) 사실의 통보 및 증명
 2. 후속 봉헌자의 지정 및 승계
- ③ 상기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된 경우 하늘의 문 성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5조 (유골의 반출)

- ① “유골의 반출”은 봉헌 기한이 종료되거나, 봉헌자 또는 연고자의 요청으로 유골이 중도에 반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기한이 종료될 경우는 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봉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2. 봉헌자 또는 연고자는 봉헌된 유골을 중도 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증명한다. 단, 연고자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봉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중도 반출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② “반출 증명”은 유골의 반출 시 하늘의 문 성당에서 정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기타 처분”은 유골이 반출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자 또는 기타 연고자와 연락 두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로 무연고처리 후 반출할 수 있다.

제16조 (무연고처리 및 반환)

- ① 하늘의 문 성당에 봉헌된 유골이 본 준수사항에 따라 봉헌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헌자에게 해당 유골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무연고 처리할 수 있다.
- ② 봉헌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연장을 위한 신심기금봉헌금을 봉헌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유골을 무연고 처리할 수 있다.
- ③ 처분 절차는 유골의 보관 기한이 지나면 하늘의 문 성당에서 정한 위치의 유족동산에 봉헌할 수 있다. 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멸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④ 유골의 반출로 인해 봉헌단 봉헌이 종료된 경우는 봉헌단 시설을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봉헌단 봉헌 후 봉헌하지 않고 30년 경과 시에 신심기금봉헌금을 봉헌하지 않으면 무상 반환될 수 있다.

제17조 (시설관리 및 장례 예식)

- ① 하늘의 문 성당은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봉헌자는 타 종교를 상징하는 물품이나 승인받지 않은 석물 설치와 나무 식재, 인조물 등을 포함하여 추가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추가시설물은 공정한 기간까지 봉헌자가 처리하며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늘의 문 성당에서 임의 처리하고 봉헌자에게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장례 예식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봉헌 예절을 포함한 모든 장례 예식은 천주교에서 허락한 예식만을 할 수 있으며, 하늘의 문 성당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2. 운구 예절을 포함한 봉헌 예절은 천주교회의 기본 전례에 의거, 인천교구의 방침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봉헌당 건물 내부에는 음식물, 꽃 종류 등의 물품 반입과 애완견 출입을 금지한다.
 4. 봉헌당 건물 내부에서는 일반적 제절(제사를 지내는 절차)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8조 (특례사항)

천재지변, 전쟁, 테러, 붕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하늘의 문 성당에 봉헌되어 있는 유골이 훼손되었을 경우 봉헌자는 하늘의 문 성당에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

- ① “개인정보의 제공”은 관계 법률에 따라서 봉헌자 본인 및 봉헌(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는 하늘의 문 성당에 제공된 개인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0조 (시행일)

본 준수사항은 2023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된다.

(주의사항)

봉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준수한다. (□에 √을 표시한다.)

1. 모든 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준수사항 제6조 제1항) ☐
2. 봉헌 시 봉헌예정자(고인)를 지정한다. (준수사항 제5조 제1항) ☐

년 월 일

봉헌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